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디지털조선일보

THE ni

서울교육대학교 - 디지털조선일보 - THE AI(더 에이아이) 업무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 - 디지털조선일보 - THE AI(더 에이아이)는 인공지능 교육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신의와 성실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 인공지능 교육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사업 협력을 위한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분야) 협약 기관은 인공지능 교육 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공동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2. 교육체계 상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
3.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
4. 학술 및 인적 교류에 관한 사항
5.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
6. 기타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

제3조(협약기간) ① 본 협약은 3자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고, 협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협약 갱신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협약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3자 기관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.

제4조(협약의 해제·해지) ① 3자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일방 당사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
2.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
3.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

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 3자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정보 등 비밀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이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법적 구속력) 본 협약서는 제5조를 제외하고 3자 간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.

제7조(기타 사항) ① 본 협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3자 간 협의하여 해결한다.

②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3자 기관 간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
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3자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4월 11일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서울교육대학교

총장 장신호

장신호



THE AI 더 에이아이

대표이사 황민수

황민수



디지털조선일보

디지털조선일보

대표이사 김영수

김영수